

안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

의안 번호	~000
----------	------

제출년월일 : 2012. 2. 22.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안이유

- 안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가 되었던 「농지법」 제44조(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제45조(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제46조(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제47조(경비 보조)·제48조(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및 「농지법시행령」 제61조·제62조·제63조·제64조·제65조·제66조·제67조·제68조·제69조와 「농지법시행규칙」 제54조가 「농지법」 이 일부 개정되어 2009년 5월 27일 삭제(2009.11.28일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동 조례 폐지

□ 폐지조례안 : 불임

□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 : 2011. 12. 26. ~ 2012. 1. 16.(22일간)

□ 기타 참고사항 : 불임

- 현행 조례

안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

안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생명산업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생명산업과장 정 점 근
	담당·팀장 직위·성명	농정계장 김 기 석
	담당자 성명·전화	구성회 (행정 2313)

□ 현행 조례

안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조례

제정 1990.12.07 조례 제0344호
개정 1991.01.30 조례 제0370호
개정 1995.06.08 조례 제0631호
개정 1997.07.23 조례 제0756호
개정 1999.07.28 조례 제0853호
(일부개정) 2002.10.08 조례 제102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07.28>

제2조(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 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산시상록구농지관리위원회
2. 안산시단원구농지관리위원회

<본조개정 2002.10.08>

제3조(농지 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 농지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할 구역은 안산시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07.28>

1. (삭제) <1999.07.28>
2. 농지 및 농지의 소유 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3.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등
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5.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확인
6.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
7. 기타 농지와 농지임대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8.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의 처리

제5조(위원회의 정수)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별표1"과 같이 한다.

<개정 1995.6.8, 1997.07.23>

제6조(위원의 추천 및 위촉) ①각 동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때에는 주민총회 또는 동장이 포함된 동을 대표하는 단체회의를 소집하여 법 제47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농업인중 농업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02.10.08>

②구청장은 동장이 추천한 자에 대하여 영 제66조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후 위촉하여야 한다. 단, 동장이 추천한자 중 영 제66조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자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격자를 다시 추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08>

③구청장은 동장이 추천한 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영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1997.07.23, 2002.10.08>

제7조(위원의 제척 · 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은 본인 또는 동거가족 및 그 배우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심의 또는 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 및 이해 관계자는 그 원인을 명시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및 이해 관계자가 기피의 원인이 있음을 알고 심의 및 조정 절차에서 진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심의 및 조정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2. 당사자의 일방과 친척관계 또는 특별한 친고 관계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을 접수한 때마다 당해 위원회 의견을 들어 기피 신청의 적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기피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된 때에는 당해 위원은 심의 및 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은 심의 또는 조정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업무수행) 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 적격여부를 확인한다.

제9조(조례 개정의 건의) 위원회는 이 조례가 인근 지역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경제사정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에 조례의 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위원회가 회의를 통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 위원의 직과 성명, 회의안건 및 내용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소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은 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의결은 이를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본조신설 1995.06.08>

제12조 (삭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6.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0.08)

이 조례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